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6-25호

재생에너지 전력거래계약(PPA) 시장 활성화와 지붕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2026년 지붕 태양광 보증보험료등 지원사업」 협약기관 모집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3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2026년 지붕 태양광 보증보험료등 지원사업」 협약기관 모집 공고

□ 모집대상 및 신청자격

○ 모집대상 :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상품을 운영할 수 있으며 주요 협약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 신청자격

신청 자격
❶ **공단과 협약하여 보험료·공제료 청구, 환급금 정산 및 지원대상 데이터 공유 등 행정 지원이 가능한 기관** [주요 협약내용 참고]
❷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업 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증 또는 공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기관**

< 2026년 지붕 태양광 보증보험료등 지원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지붕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보증보험·공제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붕 태양광 보급확대 및 안정적인 발전사업 추진 지원

○ 지원대상 : K-RE100기업*과 PPA를 3년 이상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

* 재생E사용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 등록증명서'를 보유한 기업

○ 지원내용 : 지붕태양광 임대차 계약 관련 보증보험료·공제료의 최대 50% 지원 (기업 규모, 저탄소 모듈 사용, PPA 중개플랫폼 활용에 따라 차등)

○ 사업예산 : 총 100억원

○ 운영절차

사업공고	PPA 체결	지원사업 신청	신청확인서 발부*	협약상품 가입	보험료 납부
공단	신청인	신청인→공단	공단→신청인	신청인→협약기관	공단, 신청인 →협약기관

* (신청확인서) 신청자 조건 적격 시 발부하여 보험 가입 시 제출하도록 안내 예정

□ 협약 상품 요건

○ **(보증내용)** 각 협약기관은 자체 규정 및 약관 상품에 따라 **아래 보증 내용을 포함한 상품을 제안하되, 일부 또는 상호 결합 형태도 인정**함

- 임대인의 권리 침해로 임대차 권리 상실 또는 사업 중단 시 보장
- 태양광 설비 자산가치(목적물) 및 사업 중단에 따른 기대 발전수익 손실 보장
- 건물주 의무 불이행 또는 제3자 권리 행사 등으로 인한 재물손해 보장

○ **(상품종류)** 보증보험, 공제상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상품

○ **(보증기간)** 전체 사업 기간에 대한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 요청으로 사업 중 일부 기간만 보장하는 것은 인정함

○ **(가입대상)** 보험 계약자 지위와 상관없이 **신청자**(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보증보험료·공제료를 직접 납부**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함

□ 주요 협약 내용

○ **(보험료·공제료 청구)** 지원사업 신청확인서 발급 대상자의 상품 가입 시, **공단 지원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함

* 그 외 공단 지원금에 대한 환급청구 및 수령 권한위임이 가능한 방식 포함

○ **(환급금)** 임대인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이 변경·해지되어 **환급금 발생 시,** 공단 지원금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공단으로 반환**하여야 함

○ **(이력관리)** 지원 대상인 계약 건들의 해지 시까지 가입자 현황, 보험료·공제료 납입금 및 환급 현황 등 제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통지·자료제공)** 보험·공제계약의 **무효·해지 사유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공단에 통지**하여 공단 요청에 따른 자료 제공 필요

○ **(조치)** 지원취소 등 사유 발생에 따라 공단이 지원이력 수정,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을 통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필요 조치 이행

□ 협약대상자 선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반사항, 보증상품의 요건, 협약조건 등에 대해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하며 85점 이상일 경우 적격** 평가

* 공단의 「제안서평가지침」을 준용하여 내·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복수의 기관이 적격(85점 이상)일 경우 복수 선발함

항목	내용	점수	비고
Ⅰ. 일반사항 (20)	①재무건전성(지급여력비율)	10	정량
	②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	
	③전담조직 운영의 적절성	5	정성
Ⅱ. 상품요건 (30)	①보증내용 범위 등 상품의 적합성 - 협약 상품의 구성과 보증범위가 사업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20	정성
	②가입조건의 용이성 및 상품 운영체계의 적합성 - 발전사업자가 해당 상품 가입과 활용이 용이한지 여부	10	
Ⅲ. 협약조건 (50)	①보험료·공제료 청구 및 지원사업 운영 과정의 합리성 - 협약에 따른 청구·정산 절차, 이력관리,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20	정성
	②환급금 지급 방식의 적절성 - 환급 시, 환급금이 공단으로 반환되는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여부	30	
합계		**100**	

□ 모집 절차

추진 절차	담당기관	비고
협약기관 모집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 협약기관 모집 공고 게시
↓		
서류 제출	협약기관	**<제출서류 목록>** ○ [붙임1] 법인·개인정보 수집동의서 ○ [붙임2] 지원사업 협약기관 신청서 ○ 지급여력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자료
↓		
협약기관 선정	한국에너지공단	○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여부 판단
↓		
업무협약	협약기관-공단	○ 협약 체결 후 본 사업 공고·운영 추진

□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6. 8. 10.(월) 18시까지

○ 접수방법 : 신청서 공문 송부 및 원본 전자메일(reuse@energy.or.kr) 제출

- 제목: “지붕 태양광 보증보험료등 지원사업 협약기관 신청”

□ 문의처

○ 재생정책처 RE100정책팀 ☏ 052-920-0705, ✉ reuse@energy.or.kr

[붙임1] 법인·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법인・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붕 태양광 보증보험료등 지원사업 협약기관 모집”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지붕 태양광 보증보험료등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신청기업의 선정 및 관리를 위한 법인 및 관계자의 개인정보 항목 수집

2. 수집·이용 항목

○ 기업 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및 신청 담당자의 개인정보 항목 (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3. 보유·이용기간

○ 위 법인·개인정보는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 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해당 정보는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체결된 보험 계약의 해지 및 환급금 정산 등 거래 관계가 최종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법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시 지붕 태양광 보증보험료등 지원사업 협약기관 모집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5. 위와 같이 귀하의 법인정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붙임2] 지원사업 협약기관 신청서

<table>
<tr><th colspan="4">「2026년 지붕 태양광 보증보험료등 지원사업」 협약기관 신청서</th></tr>
<tr><td rowspan="5">신청인
정보</td><td>성함</td><td colspan="2"></td></tr>
<tr><td>소속 부서</td><td colspan="2">(부서) (직위)</td></tr>
<tr><td rowspan="3">연락처</td><td>전화(휴대폰)</td><td>- -</td></tr>
<tr><td>전화(사무실)</td><td>- -</td></tr>
<tr><td>메일 주소</td><td>@</td></tr>
<tr><td rowspan="4">기관
정보</td><td>기관명</td><td colspan="2"></td></tr>
<tr><td>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기업 유형</td><td colspan="2">□「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업 허가를 받은 기관</td></tr>
<tr><td colspan="2">□ 관련 법령에 따라 보증 또는 공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기관(공제조합, 금융기관 등)</td></tr>
</table>

본인은 “2026년 지붕 태양광 보증보험료등 지원사업 협약기관 모집” 공고 내용 및 지원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제출하는 서류의 모든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 업체명 (대 표) 홍길동 (인)

(담당자) 홍길순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가. 기관 일반 현황

① 기관명 :

② 근거 법령 및 조항 : *해당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기재*

③ 전담조직 운영 계획

○ 지원사업 운영 계획 :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사업 계획 기술*

나. 상품 설명

① 상품 개요 설명

○ *상품명, 개발 배경 및 목적, 가입 가능 시설(예. 공장 지붕) 등 상품 일반내용 기술*

② 보증 범위 및 선택(특약) 사항

○ 기본 보장(필수) : *사업 목적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보장 기술*
○ 선택 보장(선택) : *추가 보장 범위나 선택 가능한 특약사항 제시*

③ 가입조건 및 상품 운영체계

○ 가입 대상 및 관계 : *발전사업자와 임대인 간의 계약자/피보험자 설정 방안 기술*
○ 가입 절차 : *신청 접수부터 증권 발행까지의 프로세스 기술*

다. 지원사업 운영 방식

① 보험료·공제료 청구 및 정산 체계

○ 정산 프로세스 : *공단과 기관 간의 지원금 청구 방식에 대한 운영 계획 제안*

○ 자금 흐름 : *가입자 자부담분과 공단 지원금의 수납 및 처리 방안 등*

② 환급금 처리 및 반환 절차

○ 환급 사유 및 계산 : *환급금 발생 시 적용할 산출기준(일할 계산 등)을 기재*

○ 반환 방식 : *발생한 환급금 중 공단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으로 반환하는 절차와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기술*

[붙임3] 제안서 평가표 및 계량평가기준

제안서 평가표

평가일자 : 2026. . .

<table>
<tr><td rowspan="2">공고명</td><td rowspan="2">2026년 지붕 태양광 보증보험료등 지원사업 협약기관 모집 공고</td><td>신청기관명</td><td colspan="6"></td></tr>
<tr><td>사업관리자</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평가항목</td><td rowspan="2">평 가 내 용</td><td colspan="6">평점기준</td><td rowspan="2">배점</td><td rowspan="2">평점</td></tr>
<tr><td>탁월</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저조</td></tr>
<tr><td rowspan="3">I. 일반사항
(20)</td><td>① 재무건전성(지급여력비율)</td><td colspan="5" rowspan="2">계량평가기준에 의함
[별지 참조]</td><td>10</td><td></td></tr>
<tr><td>②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td><td>5</td><td></td></tr>
<tr><td>③ 전담조직 운영의 적절성</td><td>5</td><td>4.5</td><td>4</td><td>3.5</td><td>3</td><td>5</td><td></td></tr>
<tr><td rowspan="2">Ⅱ.상품요건
(30)</td><td>① 보증내용 범위 등 상품의 적합성</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d>20</td><td></td></tr>
<tr><td>② 가입조건의 용이성 및 상품 운영 체계의 적합성</td><td>10</td><td>9</td><td>8</td><td>7</td><td>6</td><td>10</td><td></td></tr>
<tr><td rowspan="2">Ⅲ.협약조건
(50)</td><td>① 보험료·공제료 청구 및 지원사업 운영 과정의 합리성</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d>20</td><td></td></tr>
<tr><td>② 환급금 지급 방식의 적절성</td><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d>30</td><td></td></tr>
<tr><td colspan="7">합 계</td><td>100</td><td></td></tr>
<tr><td>종합의견</td><td colspan="8"></td></tr>
<tr><td>평가위원</td><td colspan="8">소속 기관명 : 성 명 : (서명)</td></tr>
</table>

[별지] 계량평가기준

1) 지급여력비율(10점)

-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X 100%으로서 신지급여력제도(K-ICS) 또는 RBC비율 기준으로 제출

* 지급여력금액: 「보험업감독규정」제7-1조에 따른 금액

** 지급여력기준금액: 「보험업감독규정」제7-2조에 따른 금액

-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공시된 지급여력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비율 별 배점은 다음과 같음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 고
지급여력비율	300% 이상	배점의 100%	탁월
	200% 이상 ~ 300% 미만	배점의 90%	우수
	150 이상 ~ 200% 미만	배점의 80%	보통
	150% 미만	배점의 70%	저조

① 지급여력비율은 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단, 최근 분기 공시자료 내 지급여력비율이 전년도 기준 수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수치를 가장 최신 비율로 인정한다.

② 신청기관은 평가를 위하여 경영공시자료, 결산보고서 등 지급여력비율이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입찰 시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